

3.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8-431호 1998. 10. 15

개정이유

교통영향평가제도 및 교통유발부담금제도와 관련한 규제개혁추진과제를 법령에 반영하고,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

주요내용

- 가.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토록하는 한편,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류시설(화물터미널 및 창고)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, 기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(무인변전소, 아파트단지내 상가등)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비부과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당해 시설물의 교통량을 100분의 2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70까지 경감하던 것을 승용차 10부제 실시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통량의 최소 감축비율을 100분의 10이상으로 낮추고, 경감율도 100분의 90까지 확대 조정함.
- 다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기술사자격 또는 교통기사자격을 취득한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의 전문인력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자격증 취득후의 실무 경력(2년) 조건을 폐지함.
- 라. 교통영향평가등급별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,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평가등급을 새로이 부여받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.

주택회보